

오타와한인교회

헌장및부칙

헌장

제 1 조-명칭

본 교회는 “오타와한인교회”라 칭한다.

제 2 조-목적 및 사업

본 교회의 목적 및 사업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①성경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사역을 위하여 신자들을 훈련시키는 것; 성도간의 교제를 도모하는 것; 국내 및 국외의 구세주 예수의 복음전파에 힘쓰는 것; 신자로서 사회에 헌신하는 것이다.

제 3 조-신조

오타와 한인교회는 초교파 회중으로 구성된 독립 교회로서 아래에 명기된 신조의 성서적 기독교 신앙위에 확고히 선다.

1. 우리는 성부, 성자 및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2. 우리는 창조, 계시, 구속과 최후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다.
3. 우리는 성경의 신적 영감과 완전 진실성을 믿 으며, 성경이 신앙과 행위에 대한 최고의 법칙임을 믿는다.

4.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동정녀 탄생, 무죄하신 지상생애, 기적,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육체적부활, 승천하사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주의날에 인격적이며 육체적으로 재림하실 것을 믿는다.
5. 우리는 타락(아담과 하와의) 이후 모든 인간이 죄악과 허물을 가지게 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음을 믿는다.
6. 우리는 오직 인간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 죄의 형벌과 지배 및 타락으로부터 구속됨을 믿는다.
7.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인이 의롭게 됨을 믿는다.
8.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중생, 인치심, 성화, 믿는 자를 하나이신 그리스도의 몸(우주적 교회) 안으로 세례 시키시는 충만과 능력, 영적 은사들로 무장시키심, 그리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하시는 사역을 믿는다.
9. 우리는 모든 믿는 자들이 속한 그리스도의 몸 된 하나의 거룩한 우주적 교회를 믿는다.
10. 우리는 이 세상과 구별됨이 크리스천 생활의 근본적인 지표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임을 믿는다. 즉 우리는 모든 종교적 사교와 모든 세속적이며 죄악적인 쾌락, 사탄의 지배아래 속한 모든 행위와 관계로부터 구별되어야 한다.

제 4 조-의식과 규례

1. 성경에 지시된 바와 같이 세례 및 성찬식을 정기적으로 집행하여 지킨다.
2. 기독 관례에 준하여 기독교인의 혼례와 장례를 거행한다.

제 5 조-회원자격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본 헌장에 명시된 신앙고백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며, 만 18 세이상으로 6 개월 이상 정기적으로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에 회원등록을 한 사람에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 1 항-회원의 의무와 권리

1.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 가. 개인의 영적 성장
 - 나. 공식예배에의 참여
 - 다. 선교, 친교, 교회행사 및 운영에 적극 참가

- 라. 교회 현장의 준수
- 2.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가. 정기 및 임시총회에의 참석
 - 나. 정기 및 임시총회에서 투표권

제 6 조-교회 제직원

교회의 제직원은 담임목사, 부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권사, 협동장로, 협동권사로 구성된다.

제 1 항-담임목사

- 1. 자격
 - 가. 담임목사는 성서가 요구하는 필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디모데전서 3:1 -7, 디도서 1:5 - 9,베드로전서 5:1 - 4, 디모데후서 2:15, 4:1 - 5.
 - 나. 목사 안수를 받은 자여야 한다.
- 2. 임무
 - 가. 담임목사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모든 일반/특별예배, 성례를 관장, 집례하고 모든 교회행사를 관리한다.
 - 나. 영적 지도자로서 담임목사는 설교, 교육, 제자훈련, 목회적 돌봄(Pastoral care : 심방, 병든 자를 위한기도, 목회 상담등), 교회행정, 계획과 교회의 성장과 목적완수를 위한 인도의 책임이 있다. 아무도 담임목사의 승인없이 강단에 설 수 없다.
 - 다. 담임목사는 교회, 교회내 각 기관 및 담당자들의 예배, 말씀선포, 교육과 선교의 직무 수행을 지도한다.
 - 라. 담임목사는 당회 와 집사회의 회원이 된다.

제 2 항-부목사

- 1. 자격
 - 가. 부목사는 성서가 요구하는 필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디모데전서 3:1 - 7,디도서 1:5 - 9,베드로전서 5:1 - 4,디모데후서 2:15, 4:1 - 5.
 - 나. 목사 안수를 받은 자여야 한다.
- 2. 임무
 - 청빙 서한에 명시된 임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며 상기된 담임목사의 사역에 적극 협조한다.

제 3 항-전도사

1. 자격

전도사는 성서가 요구하는 필수자격을 갖춘 자여야 한다: 디모데전서 3:1 - 7, 디도서 1:5 - 9, 베드로전서 5:1 - 4, 디모데후서 2:15, 4:1 - 5.

2. 임무

청빙 서한에 명시된 임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제 4 항-시무장로

1. 자격

시무장로는 본 교회에 등록한지 최소한 1년 이상이 된 세례교인이어야 하고 성서에 언급된 장로의 필수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도행전 6:3, 디모데전서 3:1 - 7, 디도서 1:5 - 9.

2. 임무

시무장로는 당회의 회원으로 담임목사를 도와 성찬식과 세례식을 행하고, 성도들을 돌보며(Pastoral care : 심방, 병든자를 위한기도, 교회 방문자와 새 교우 환영 등) 기타 본 교회의 영적인 일을 담당한다. 시무장로는 집사직을 겸할 수 없다.

제 5 항-집사

1. 자격

집사는 본 교회에 등록한지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된 세례교인 이어야 하고 성서에 언급된 필수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도행전 6:3, 디모데전서 3:8 - 13.

2. 임무

집사는 집사회의 회원으로 교회의 행정 관련업무를 담당한다.

제 6 항-권사

1. 자격

권사의 자격은 장로의 자격과 동일하다. 당회는 연례총회에 회중의 인준을 위하여 모범적인 신도를 권사후보로 추천할 수 있다.

2. 임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권사는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면의 기도로 목회사역을 돕는다.

제 7 항-협동장로

1. 자격

협동장로는 성서에 언급된 장로의 필수적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사도행전 6:3, 디모데전서 3:1 – 7, 디도서 1:5 – 9. 당회는 등록한지 최소한 6 개월 이상이 된 교인 중 이전에 장로로 안수된 사람을 본 교회의 협동장로로 임명할 수 있다.

2. 임무

협동장로는 장로를 도와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행하고, 교인을 심방하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며, 교회 방문자를 환영한다.

제 8 항-협동권사

1. 자격

권사의 자격은 협동장로의 자격과 동일하다. 당회는 등록한지 최소한 6 개월 이상이 된 교인 중 이전에 권사의 직분을 지닌 사람을 본 교회의 협동권사로 임명할 수 있다.

2. 임무

협동권사는 권사를 도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자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면의 기도로 목회사역을 돕는다.

제 7 조 교회조직

제 1 항-당회

당회는 본 교회의 영적인 일에 책임을 진다. 당회는 담임목사, ⁽⁶⁾시무장로들로 조직된다. 당회원의 수는 교회의 당면한 필요 또는 교회회원 30 명당 한명의 기준으로 결정된다. 담임목사가 당회장이 된다. 당회원의 임기는 3 년으로 한다.

제 2 항-집사회

집사회는 본 교회의 행정적인 일에 책임을 진다. 집사회는 회장, 총무, 회계, 각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그리고 (위원회산하) 부서의 부장 및 차장 집사와 당회장으로 구성된다. 집사회는 매년 재구성된다. 집사회는 연간 최소 4 회의 회의를 가진다. 집사회원 10 인

이상의 발의로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모든 회원에게 회의소집이 통보되어야 하고
집사회원의 과반수가 회의의 정족수를 이룬다.

제 3 항 - 집사회 회장단

집사회 회장단은 회장, 총무, 회계로 구성된다.

집사회장은 연례 정기총회, 임시총회, 집사회의 정기 및 특별회의를 소집하고 교회
행정업무에 있어서 집사회를 대표한다.

총무는 회장 부재시 회장의 업무를 대행하고 교회의 각 종회 회의기록을 관리하고
집사회가 지정하는 바 보고서를 준비한다.

회계와 재무부서 집사는 집사회가 위임한 바 대로 예산을 지출한다; 정확한 회계장부를
작성한다; 총회와 집사회가 요청할 시 재정정보를 한다; 당회가 선정한 감사자가 총회
이전에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공식 영수증 발행의 책임을 지닌다.

교회 기금의 관리

집사회 회장과 회계가 제반 교회 기금의 관리자가 된다. 관리자는 지정된 금융기관에
교회의 명의로 기금을 예금하고, 수표에 서명한다. 모든 교회기금에 지출에 앞서 부서
담당집사가 서명한 지불청구서가 제출되어야 하고 모든 지출은 회장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 4 항-위원회

본 교회의 위원회는 예배, 선교, 친교, 교육, 관리 위원회로 구성된다. 각 위원회의
구성원은 위원장, 위원, 산하부서의 부장과 차장으로 한다.

집사회는 필요시 여타 위원회 및 산하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니며, 이에 대해
당회의 인준을 받는다.

1. 예배위원회

예배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정규 주일예배와 연례 및 특별 행사
- 성가대, 찬양팀과 여타 교회 음악관련 사안
- 예배당 관리

2. 친교위원회

친교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교회 성도간 그리고 비성도와의 친목을 도모하는 행사추진
- 새교우 환영 및 돌봄
- 친교실 관리

3. 교육위원회

교육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주일학교, 기도회 및 성경 공부반등 본 교회 제반 교육사업에 대한 계획, 조정 및 수행
- 교회행사시 유아 돌보기
- 교육실 관리

4. 선교위원회

선교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활동 주관

5. 관리위원회

본 위원회의 책임은 다음과 같다:

- 재정관리
- 자산관리
- 문서관리

제 5 항 관재위원회

관재위원회는 총회에서 선출된 3 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 년이며 재선될 수 있다. 이들은 교회 자산에 직접 책임을 진다.

제 6 항 당회 집사회

당회 또는 집사회는 당회원들과 집사회원들이 참가하는 연석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필요할 경우 당회 집사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8 조- 선거 및 총회

제 1 항 - 연례 정기총회

⁽⁵⁾정기 총회는 년 2 회 개최한다.

제직 선출 및 인준을 위한 정기 총회는 1 월 1 일 이전에 개최한다. 예산과 결산을 위한 총회는 3 월 1 일 이전에 개최한다. 정기 총회는 개최 한달 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제 2 항-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이 소집될 수 있다:

- 당회 또는 집사회의 동의 하에 담임목사에 의하여
- 집사회의 과반수의 서명요청에 따라 집사회장에 의하여
- 정규회원 1/3 이상의 서명 요청에 의하여

임시총회는 2 주전에 공고되어야 한다.

제 3 항

담임목사가 사전에 개인적 이유로 자신의 부재를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 그의 부재중에 총회는 개최될 수 없다.

제 9 조- 자산

본 교회는 본 교회의 헌장 및 부칙 또는 이후 수정 개정된 헌장 및 부칙에 입각하여 교회 목적 수행에 요구되는 대로, 증여, 유산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 자산을 직접 또는 관재인의 자격으로 구매 또는 취득할 수 있으며, 부동산 및 동산의 소유, 사용, 매출, 양도, 저장, 임대, 처분하는 권리를 갖는다.

제 10 조- 비영리 단체선언

본 교회는 교인의 사적 영리의 목적을 위하여 운영될 수 없으며 모든 이윤 또는 증식은 교회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 11 조- 개정 절차

본 헌장 및 부칙은 연례 총회 또는 헌장 개정을 위하여 소집된 임시 총회에서 재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집사회 및 당회에 최소한 30 일전에 서면체출 되어야 하며 제출된 개정 안건은 총회 공고시 공표되어야 한다.

개정안은 집사회장에게 제출함으로 총회 공고시부터 총회개최시 사이에 모든 유권 회원에게 열람 가능토록 해야 한다.

개정안은 전체 회원 과반수 참석, 참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함으로 채택된다.

부칙

부칙 1 조- 회원

제 1 항- 회원 신청

당회는 회원 신청서를 받아서, 적합 여부 심사 후 등록 자격을 갖춘 자에게 등록을 허가한다.

제 2 항 - 신청절차

1. 회원신청은 정해진 신청양식에 작성 접수되어야 한다.
2. 당회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공적으로 교회 회원이 된다.

제 3 항- 회원 자격의 종료

1. 자격 상실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회에 의하여 회원자격이 종료된다:

- 자진하여 회원 자격을 탈퇴할 경우
- 사전 통보없이 1 년이상 결석할 경우
- 충분한 증거 조사결과, 극도로 비도덕적인 행위를 저지르고 반성의 여지가 없는 경우
- 성경의 원칙을 따라 조사한 결과, 신앙 고백서에 상반되는 교리의 주장으로 고의적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경우

2. 징계

- 회원의 행위가 오타와 한인교회, 성도, 자산 및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해악을 끼칠 경우 당회가 징계할 수 있다.
- 징계는 일정 기간 동안의 회원 자격정지, 직분면직, 파문을 포함한다.
- 징계의 대상이 된자는 성경의 원칙에 따라 판단할 담임목사나 당회에 재심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 모든 징계행위는 교정적이어야 하며 징계 받는 자의 정상복귀에 힘써야 한다.

부칙 2 조- 제직원

제 1 항- 담임목사

1. 추천과 청빙

⁽³⁾당회와 집사회가 공동으로 청빙 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당회와 집사회가 총회에 담임목사 후보자를 추천한다.

담임목사는 당회와 집사회가 제출한 추천에 따라, 청빙을 위한 특별 총회에서 전체 회원 과반수 참석,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함으로 청빙된다.

청빙후 3 년 이내에 총회에서 담임목사에 대한 위임 투표를 실시한다. 전체 회원 과반수 참석,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함으로 위임이 결정된다.

2. 사례

모든 교인은 담임목사의 목회에 대한 사례를 책임진다. 사례는 당회의 조언을 받아서 집사회가 집행한다.

3. 정년

담임목사의 정년은 만 65 세이다.

4. 평가

담임목사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5. 사임

담임목사는 당회와 집사회 앞으로 문서를 통하여 교회에 2 개월전 알림으로 사임할 수 있다. 퇴직금은 당회와 집사회가 결정한다.

6. 부재

담임목사의 부재시⁶⁾ 당회와 집사회는 헌장이 부여한 모든 담임목사의 권한을 대신한다. 또한 당회는 새 담임목사가 결정될 때까지 강단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담임목사가 공석인 동안 당회는 당회원 중 1 인을 임시 당회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7. 면직

담임목사는 개인적 부도덕함이나 개인신조, 설교 또는 가르침이 본 교회의 교리나 신앙고백에 상반됨에 근거하여 교회 제직원들이 소집한 특별총회에서 전체교인 과반수 참석, 참석교인 2/3 의 찬성으로 면직될 수 있다. 이경우, 담임목사는 최소한 1 개월분의 급여를 받는다.

8. ⁽⁴⁾재심 청원의 권리

- 1) 담임목사는 해임을 포함한 총회의 면직 결정을 받았을 때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2) 담임목사가 재심을 원한다면, 서면으로 작성된 면직 통지를 받은 후 10일 안에 본인의 의사를 당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3) 재심장에는 재심의 근거를 지정해야 한다.
- 4) 재심인은 자신을 변호하기위해 당회와의 일회 한정 회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당회는 재심인의 요청을 따라 최소한 한번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5) 재심인은 그런 회의에 대리인을 동행 할 수 있다.
- 6) 당회는 재심 청원을 검토한다.
- 7) 재심 청원장을 받은 후 당회는 30일안에 당회의 결정을 재심 청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8) 당회의 결정이 총회의 면직 결정을 유지하면 당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9) 당회의 결정이 총회의 면직 결정을 역전하게 되면 당회의 결정은 총회에서 인준 받아야 한다.
- 10) 재심 청원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안에서 재심인의 지위는 공식적인 소송을 당했을 때와 같다.
- 11) 재심 청원 결정에 따라 재심인의 지위의 변경이 있을때 그 변경은 처음 공식적인 소송의 날짜 까지 소급된다.

제 2 항-부목사

1. 추천과정빙

⁶⁾당회가 추천하여 당회 집사회의 인준으로 임명한다. 당회가 제출한 추천에 따라, 당회 집사회 과반수 참석, 참석회원 2/3 의 찬성을 득함으로 임명된다.

2. 사례

모든 교인은 부목사의 목회에 대한 사례를 책임진다. 사례는 당회의 조언을 받아서 집사회가 집행한다.

3. 정년

부목사의 정년은 만 65 세이다.

4. 평가

부목사에 대한 평가가 정기적으로 실시된다.

5. 사임

부목사는 당회와 집사회 앞으로 문서를 통하여 교회에 2 개월 전 알림으로 사임할 수 있다. 퇴직금은 당회와 집사회가 결정한다.

6. 면직

부목사는 개인적 부도덕함이나 개인신조, 설교 또는 가르침이 본 교회의 교리나 신앙고백에 상반됨에 근거하여 교회 제직원들이 소집한 ⁽⁶⁾특별 당회 집사회의에서 당회 집사회원 과반수 참석, 참석회원 2/3 의 찬성으로 면직될 수 있다. 이 경우, 부목사는 최소한 1 개월분의 급여를 받는다.

7. ⁽⁴⁾재심 청원의 권리

- 1) 부목사는 해임을 포함한 ⁽⁶⁾당회 집사회에서 면직 결정을 받았을 때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2) 부목사가 재심을 원한다면, 서면으로 작성된 면직 통지를 받은 후 10일 안에 본인의 의사를 당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3) 재심장에는 재심의 근거를 지정해야 한다.
- 4) 재심인은 자신을 변호하기위해 당회와의 일회 한정 회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당회는 재심인의 요청을 따라 최소한 한번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5) 재심인은 그런 회의에 대리인을 동행 할 수 있다.
- 6) 당회는 재심 청원을 검토한다.
- 7) 재심 청원장을 받은 후 당회는 30일안에 당회의 결정을 재심 청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8) ⁽⁶⁾당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9) 재심 청원이 진행되는동안 교회안에서 재심인의 지위는 공식적인 소송을 당했을 때와 같다.
- 10) 재심 청원 결정에 따라 재심인의 지위의 변경이 있을때 그 변경은 처음 공식적인 소송의 날짜 까지 소급된다.

제 3 항-전도사

1. 추천과 임명

당회가 추천하여 당회 집사회의 인준으로 임명한다. 당회가 제출한 추천에 따라, 당회 집사회 2/3 이상의 찬성을 득함으로 임명된다.

2. 사례

모든교인은잔도사의목회에대한사례를책임진다. 사례는당회의조언을받아서집사회가집행한다.

3. 정년

전도사의정년은만 65 세이다.

4. 평가

전도사에대한평가가정기적으로실시된다.

5. 사임

전도사는당회와집사회앞으로문서를통하여교회에 2
개월전알림으로사임할수있다.퇴직금은당회와집사회가결정한다.

6. 면직

전도사는 개인적 부도덕함이나 개인신조, 설교 또는 가르침이 본 교회의 교리나 신앙고백에 상반됨에 근거하여 교회 제직원들이 소집한 특별총회에서 전체 교인 과반수 참석, 참석 교인 2/3 의 찬성으로 면직될 수 있다. 이 경우, 전도사는 최소한 1 개월분의 급여를 받는다

7. (4) 재심 청원의 권리

- 1) 전도사는 해임을 포함한 당회 집사회의 면직 결정을 받았을 때 재심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 2) 전도사가 재심을 원한다면, 서면으로 작성된 면직 통지를 받은 후 10일 안에 본인의 의사를 당회 서기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3) 재심장에는 재심의 근거를 지정해야 한다.
- 4) 재심인은 자신을 변호하기위해 당회와의 일회 한정 회의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당회는 재심인의 요청을 따라 최소한 한번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 5) 재심인은 그런 회의에 대리인을 동행 할 수 있다.
- 6) 당회는 재심 청원을 검토한다.
- 7) 재심 청원장을 받은후 당회는 30일안에 당회의 결정을 재심 청원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 8) 당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다.
- 9) 재심 청원이 진행되는 동안 교회안에서 재심인의 지위는 공식적인 소송을 당했을 때와 같다.
- 10) 재심 청원 결정에 따라 재심인의 지위의 변경이 있을 때 그 변경은 처음 공식적인 소송의 날짜까지 소급된다.

제 4 항- 당회원

다음의 부칙은 담임목사⁽⁶⁾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1. 추천과 인준

당회원은 집사회에 의하여 추천되어 연례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함으로 인준된다.

2. 정년

당회원의 정년은 만 70 세이다.

제 5 항- 집사회

1. 추천과 인준

집사회원은 당회에 의하여 추천되어 연례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함으로 인준된다.

제 6 항 - 권사

1. 추천과 인준

권사는 당회에 의하여 추천되어 연례 정기총회에서 참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을 득함으로 인준된다.

일반주

본 헌장과 부칙은 교회 제직에 의하여 입안되어 1982 년 12 월 26 일 헌장 개정을 위하여 소집된 특별 총회에 상정되었다. 교회 회중의 검토와 수정을 거쳐 상기된 대로 채택되었다. 헌장의 영어본이 교회헌장의 원본이 되고 한국어 번역본과 해석상의 차이점이 발행할 경우 원본을 따를 것임이 총회에서 결정되었다.

1 차 개정주

⁽¹⁾제 2 조 “목적 및 사업” 의 두구절의 삽입은 1997 년 1 월 19 일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 차 개정주

⁽²⁾위에서 명기된 개정조항들은 1999 년 1 월 12 일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3 차 개정주

헌행 헌장과 부칙의 개정안은 2009 년 3 월 1 일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4 차 개정주

⁽⁴⁾위에서 명기된 부칙의 개정조항들은 2014 년 12 월 14 일 임시총회에서 채택되었다.

5 차 개정주

⁽⁵⁾위에서 명기된 개정조항은 2017 년 9 월 24 일 임시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6 차 개정주

⁽⁶⁾위에서 명기된 개정조항은 2023 년 12 월 03 일 인사 총회에서 채택되었다